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현실화하고 용어를 정비해 명확히 표현하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의 설치 및 명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 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실화함(안 제7조)
- 라. 응급질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 마.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를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명칭 및 위치)”를 “(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를 “정신건강복지센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위치 선정 시”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로, “적용하도록”을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제7조의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져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 제목 “(기본사업의 내용)”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수행하도록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필요하다고”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연계

11.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제8조제1항 중 “센터 운영”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센터를”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센터”

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예산의 지원)”을 “(운영예산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예산을”을 “경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의 구성은”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 대표
3. 관내 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단체 추천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1호 중 “센터조직”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센터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삭 제>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
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운
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
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
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
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
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축
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
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
속하여야 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
지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
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
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
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다른 -----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
-----.

제5조(센터의 설치 등) ① 정신건
강복지센터는 -----

하 “동작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치 선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7조의 기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

-----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야 -----
-----.

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제7조의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져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주최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변경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변경 및 선정, 사업 및 인력의 양수·양도 이행확인 등 구민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며, 역할 수행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종료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보건소장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

4.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대표자 1명

5.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자 대표 1명

6. 관내 지역사회 복지기관 추천자 또는 정신건강 관련 단체 추천자 1명

7. 기타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현격한 공이 있는 자

제7조(기본사업의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 10. (생략)

<신설>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력)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시 제7조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제7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연계

3. ~ 10. (현행과 같음)

11.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12. -----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제8조(인력)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보건 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 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임상자문의를 두어 자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④ 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과 같다.

제9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을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확보

-----.

② -----
-----, ----- 정신건강복지
센터 -----

-----.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 -- 정신
건강복지센터장-----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9조(운영예산의 지원 등) ① --
---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
복지센터 ----- 경비를
-----.

<삭 제>

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간 응급입원 되었을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삭 제>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 설>

<신 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2.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 대표

3. 관내 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단체 추천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직 ----
2. 정신건강복지센터 -----
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신 설>

제11조(운영규정의 준수) ① 동작
구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
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
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
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준
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
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변경에 관한 사항

4.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
용한다.

<삭 제>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
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
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
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
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
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가 제7
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

<삭 제>

제11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
지원) ① ----- 정신건강복지
센터-----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제14조</u>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u>제12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
---	---